

가입비등 예치증서			
예치번호			
예치 신청인 (조합가입신청자)			
수령인 (모집주체)			
예치기관명		계좌번호	
예치금액	₩	(금	원 정)
예치이율	연 %	관리수수료	₩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의5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입비등을 예치했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예치기관의 장(지점장) . 인			

예치기관 주의사항

-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 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줘야 합니다.
-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한 사실을 모집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.
-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입비등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.

조합가입신청자 주의사항

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가입신청자가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 가입비등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- 조합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입비등은 모집주체에게 지급됩니다.